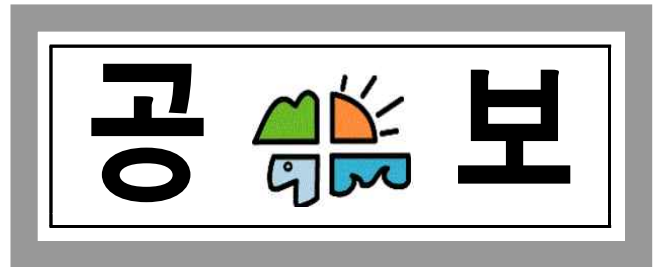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82호 2023년 8월 4일(금)

훈 령

-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 처리 규정 2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종로3-18호선 외 3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8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8월 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훈령 제782호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및 속초시장(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이 확정·종결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속초시 또는 속초시장을 말한다.
2. "소송비용 회수 담당부서"란 속초시 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에서 전반적인 소송비용 회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행정소송·국가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행정소송·국가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소송비용 회수 담당부서 송무 담당자(이하 ‘송무 담당자’라 한다)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송무 담당자는 법무부 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송무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송무 담당자는 법무부 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송무 담당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송무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① 소송비용 회수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 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유지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회수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① 송무 담당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소송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비용 회수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송무 담당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 지휘를 받아야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8호선 외 3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8호선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속초시 청호동 459-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8호선, 소로1-13호선, 소로1-16호선, 소로2-97호선)
- 명칭: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8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중로3-18호선	L=102m, B=12m	가각부 선형조정	
도로	소로1-13호선	L=463m, B=10~13m	L=51m, B=10m →13m	폭원확장
도로	소로1-16호선	L=310m, B=10~12m	L=39m, B=10m →12m	폭원확장
도로	소로2-97호선	L=245m, B=8~10m	L=57m, B=10m →12m	폭원확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제이에스디앤아이 대표이사 조 중 용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23, 5층 502호(대치동, 신아빌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5. 7. 31.

6. 법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중로3-18호선	L=102m, B=12m	A=8m ²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및 새로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귀속
도로	소로1-13호선	L=463m, B=10~13m	A=155m ²	
도로	소로1-16호선	L=310m, B=10~12m	A=79m ²	
도로	소로2-97호선	L=245m, B=8~10m	A=111m ²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청호동	459-330	대	91	34	공	속초시				
2	청호동	459-260	잡	166	2	공	강원도				
3	청호동	459-289	잡	84	2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청호동	1342	도	25,878.5	116	공	속초시				
5	청호동	459-111	대	145	5	공	속초시				
6	청호동	459-113	대	559	2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7	청호동	459-118	대	56	1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8	청호동	459-119	대	139	1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9	청호동	459-122	대	1,547	11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계				28,665.5	35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종이 시행하는 속초시 대포동 245-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8월 2일

속 초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시 대포동 245-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사업주체 및 대표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위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245-9 외 8필지
 - 면적: 7,586㎡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3,990.78㎡
 - 연면적 : 20,477.65㎡
 - 주건축물수 : 2동
 - 지하층수/지상층수 : 지하 3층/지상 4층
 - 총세대수 : 36세대
 - 사업비 : 77,327,977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3. 10. 2. ~ 2025. 10. 2.(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15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